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성 명: 에스에이엠(주)(배상훈) 사업자등록번호: 249-87-02002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환경해양대학 606호

재산의 표시: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환경해양관 606호(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27.00m²)

2020년 10월 20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국유 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그 사용·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부 경 대 학 교



허 가 조 건

-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교원 창업기업 운영으로 한다.
-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사용료)** ① 국유재산법에 따라 2020. 10. 1. ~ 2021. 1. 31.까지의 산출된 사용료는 금일십사만오천삼백사십원(₩145,340)으로 한다. 다만, 다년간의 경우 다음 연도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보험료 별도)
 - ②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사용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한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우리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 공문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우리 대학교가「국유재산법」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 ② 동일한 업체 또는 동일한 대표자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회 연체(연도 불문) 시 국유 재산 사용허가 신규 및 갱신을 불허한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거부) 제10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본인의 비용으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성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따른 전기, 가스, 화기 및 기타에 의한 각종 사고 예방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는 우리 대학교의 승인을 얻은 후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공과금 등)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우리 대학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사용목적의 변경
 - 2. 사용허가재산의 원상 변경
 - 3. 사용허가재산에의 시설물 설치
 - 4. 사용허가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 2.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하게 한 경우
 - 4.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우리 대학교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보상)**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대학교에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취소 받으려면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대학교 직원의 참여하에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우리 대학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해서 국유 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며,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우리 대학교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우리 대학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용허가재산에 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우리 대학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허가서의 해석) 이 허가서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의 해석에 따른다.